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05

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 : 김영호·한민수·김남근

김동아 • 박민규 • 진선미

이병진 · 강선우 · 김영배

이용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, 관련 지침에서는 수 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 원화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 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가 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수요 부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실정임. 일례로 서울 내 대표적인 철도 재정사업인 강북횡단선의 경우 교통소외 지역인 서울 강북권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, 사업비에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일

을 훌쩍 넘겨 지연되기도 했고, 결과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.

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도권 내 자치구 등 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여 이를 평가, 가점을 부여하고,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구분하지 아니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38조의3제2항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 가중치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~ ⑤	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
	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
	성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지
	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
	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
	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
	경우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
	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과 수
	도권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지
	아니하여야 한다.
<u>⑥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
제38조의3(국가연구개발사업 예	제38조의3(국가연구개발사업 예
비타당성조사의 특례) ① (생	비타당성조사의 특례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	②
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	
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	
항 및 <u>제6항</u> 과 관련한 사항의	<u>제7항</u>
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	
협의하여야 한다.	,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